

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 행	개 정
제9조(편입학자격) 편입학은 정규 신대원에 서 1년 이상 이수한 자로 전적대학원 성적 과 면접(구두고사)을 거친 후 편입학을 허 가하며, 학기 인정은 최대 2학기 까지로 한 다. 기타 편입학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.	<u>(삭제)</u>
제35조 (학위수여평점) 신대원 학생이 취득한 전 과목의 학점 평균 평점이 C(2.0)이상일때 학위를 수여한다.	<u>(삭제)</u>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 시행내규는 2023 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